

아트스페이스 K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순수미술 및 문화콘텐츠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, 산학협력, 인력양성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명칭 및 소재) 본 공간은 아트스페이스 K (이하 “아트스페이스”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산하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본 아트스페이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순수미술 작품 및 문화콘텐츠 작품 연구 개발
2. 전시회, 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
3. 산·학·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
4. 산업체 현장인력의 재교육 및 수탁교육
5.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
6. 기타 아트스페이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조직) 본 아트스페이스는 대학 산하 부속기관으로 둔다.

제 5 조 (구성) 아트스페이스에는 아래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
관장	1명
부관장	1명
큐레이터	1명
계약직원	약간 명
조교	약간 명

제 6 조 (임명) 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관장은 관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직무) ① 관장은 아트스페이스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관장 및 큐레이터는 관장을 보좌하면서 아트스페이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3 장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
제 8 조 (제위원회) 아트스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
가. 아트스페이스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, 연구방향의 설정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나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
다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
- 라.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마.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2. 자문위원회
- 가. 아트스페이스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나.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·경제단체의 장, 관련 산업계의 인사 및 국내·외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관계장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 - 다.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운영 및 재정

제 9 조 (재정)

- 1. 아트스페이스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, 용역비, 대관료,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2. 아트스페이스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10 조 (보고)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세칙)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